

교원 특별채용 규정

제정 2005. 06. 08.

제7차 개정 2022. 04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장 제6조 제8항에 따라 상지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국내·외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9.08.16.)

제2조(대상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(개정 2006.8.8., 2019.08.16.)

1. 신설학부(과) 및 신설전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
2. 교육 및 연구경력이 우수하거나, 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이 탁월하여 본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인사 (개정 2006.6.12., 2019.08.16.)
3. 임상교원의 경우에는 임상실적이 우수한 전문의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별한 채용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(개정 2019.08.16.)
[전부 '항'을 '호'로 변경 2019.08.16.]

제3조(자격) ① 특별채용 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(개정 2019.08.16.)

1.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정부기관 및 국내외 저명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(학위과정 제외)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 (개정 2019.08.16.)
2. 해당 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(한의대 임상경력인 경우 3년 이상인 자)
3.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이 「교원인사관리준칙」에서 정한 교원 신규임용 시 필요한 연구실적의 2배 이상이며,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(개정 2019.08.16.)
 - 가. 인문·사회·예체능계열 : 최근 4년간 국제저명학술지(SCI급) 또는 국내전문학술지(한국연구재단등재)에 단독,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3편 이상 게재(개정 2019.08.16.)
 - 나. 자연·이공·한의·보건계열 : 최근 4년간 국제저명학술지(SCI급)에 단독,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4편 이상 게재(개정 2019.08.16.)

② [항 삭제 2019.08.16.]

(개정 2006.8.8.) (전문개정 2017.1.11., 2019.08.16.)

제4조(추천) 본교의 전임교원은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적임자가 있을 경우 교무연구처에 추천할 수 있다. (개정 2006.8.8., 2019.08.16., 2022.04.20)

제5조(서류제출 및 전형방법) ① 특별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기초 및 전공심사와 면접심사의 전형절차를 거친다. (개정 2006.8.8., 2019.08.16.)

1. 교원임용지원서(개정 2019.08.16.)
2. 자기소개서(개정 2019.08.16.)
3.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(개정 2019.08.16.)
4. 연구실적물

5. 특별채용 대상 학과 발전계획서 또는 교육 및 연구계획서(개정 2006.8.8., 2019.08.16.)
6. 자격면허 관련 증서 사본(해당 분야에 한함)[호 신설 2019.08.16.]
7. 외국인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(소속국 대사관 발행)[호 신설 2019.08.16.]
8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[호 신설 2019.08.16.]

제6조(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를 둔다. [항 신설 2019.08.16.]

②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는 **교무연구처장**, 전공교원(내부위원) 2명 및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하며, **교무연구처장**을 위원장으로 한다. (개정 2017.1.11., 2019.06.25., 2019.08.16., 2022.04.20)

③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, 대학원장 및 해당 대학장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원장이 된다.

[항 신설 2019.08.16.]

④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채용기간에 한한다.

(개정 2019.08.16.)

제7조(회의) [조항 삭제 2019.08.16.]

제8조(심사절차) ①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는 채용대상자의 제출 서류에 의한 전공의 일치성 및 적합성을 심사하며, 심사방법은 교원인사관리준칙의 기초 및 전공심사 방법을 준용한다.

②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는 채용대상 학과(부)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③ 면접심사대상자는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에 따라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. [항 신설 2019.08.16.]

④ 면접심사의 방법, 진행 및 평가는 교원인사관리준칙에 명시된 면접심사 절차를 준용한다.

[전부개정 2019.08.16.]

제9조(임용제청) 총장은 임용 제청 동의자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제청하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해촉) 삭제 (2006.6.12)

제11조(채용시기) 특별채용에 의한 교원 신규 임용은 채용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,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. (개정 2006.8.8., 2019.08.16.)

[조명 변경 2019.08.16.]

제12조(기타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에게는 당해 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하며,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(기획예산과-636, 2005.6.8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기간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,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(기획예산과-570, 2006.6.12)

이 규정은 200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과-725, 2006.8.8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종전 “우수교원 특별채용 규정”의 규정명을 변경하여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1545, 2009.12.30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부칙(기획예산과-636 : 2005.6.8)의 ②항은 폐지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16, 2017.1.13)

이 규정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420, 2019.08.16)

이 규정은 2019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